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적 평정의 관장)

교원의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연구처장이 관장한다.

제3조(연구실적의 구분)

연구실적은 평정 대상자의 임용일 이후 본교 소속 표기로 게재, 발간, 발표된 연구논문 · 연구저작물 · 연구발표 · 산학협력 연구실적 · 임상진료실적으로 구분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술지에 심사위원 평가(peer review) 등을 거쳐 출판된 것으로 대학(원)별 교수업적심사위원회(이하 “업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친 논문을 말한다.

가. “국제 1급 학술지”라 함은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나. “국제 2급 학술지”라 함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다. “기타 국제학술지”라 함은 국제 2급 이상 학술지에 속하지 않은 학술지 중, 국제적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심사제 학술지를 말한다.

라. “국내 우수등재 학술지”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우수등재 학술지를 말한다.

마. “국내 1급 학술지”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말한다.

바. “기타 국내 학술지”라 함은 국내 1급 이상 학술지로 분류되지 않은 학술지를 말한다.

2. “연구저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형 · 무형의 연구 결과로, 서적의 형식을 갖춰 출판되어 공개된 저서, 창작물 등을 말한다.

가. “국제전문 학술서적”이라 함은 국외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문 학술서적을 말한다.

나. “국내 전문 학술서적”이라 함은 국내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문 학술서적을 말한다.

다. “문예 작품”이라 함은 문예지에 게재한 시, 소설, 희곡, 평론 등을 말한다.

라. “건축 준공(계획)작품”이라 함은 국내·외 전문지에 게재한 작품을 말한다.

3. “연구발표”라 함은 학술회의 및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회합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Ⅲ. 연구발표 기준에 따른다.

가. “국제학술회의 발표”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표 논문집 (Proceeding)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로 한다.

나. “국내 학술회의 발표”는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로 한다.

4. “산학협력 연구실적”이라 함은 외부 연구비 수주, 기술이전, 산업체재산권,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교원창업, 기술 및 경영 자문, 취업 연계, 계약학과·계약 트랙 유치 및 운영, 학생 창업지도,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국가기관 연구 제안, 기타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실적을 말한다.

가. “외부 연구비 수주”라 함은 본교(산하 의료기관 포함)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국·공립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기타 교육 및 실천 성격에 해당하는 위탁 사업 등의 외부 기관 수탁 연구비로서, 연구비 수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적을 말한다.

나. “기술이전”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 수행 결과로 발생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계약 체결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된 수입료 실적을 말한다. 단, 기술지도 및 공동연구 등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한다.

다.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발명·디자인 등의 산업체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의미하며,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구분한다.

라.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유치한 실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확인된 구체적인 실적을 말한다.

마. “교원창업”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 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업한 실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 관련 증빙서류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확인된 구체적 실적을 말한다.

바. “기술 및 경영 자문”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기업에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대상 기업과의 가족회사 협약체결은 필수사항이며 회사방문 일자, 자문내용 등을 포함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취업 연계”라 함은 교수의 학부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교수의 취업 지원 활동 내용 및 학생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아. “계약학과·계약 트랙 유치 및 운영”이라 함은 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한 계약학과 또는 계약 트랙의 유치, 운영과 신규과목 개설에 관한 실적을 의미한다.

자. “학생 창업지도”라 함은 학생들의 창업 과정을 지도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라 함은 기업이 산학협력단의 가족회사로 등록함을 의미한다.

카.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이라 함은 다수의 기업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정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국가기관 연구제안”이라 함은 국가가 시행하는 연구지원사업에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실적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장이 필한 증빙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파.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심사위원회는 가목 내지 타목 외의 실적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5. “임상진료실적”이라 함은 임상 전임교원이 진료행위를 통해 본교 부속 의료기관 수익에 기여한 직·간접적 실적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이 [별표 3]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 실적을 말한다.

제5조(연구실적 평정기준)

연구실적에 대한 평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연구실적 제출·심사 평정 및 결과 보고)

- ①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입력한 연구실적의 증빙과 그 목록을 교수업적 평가 절차에 따라 해당 업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적심사위원회 평가 후 평가단위원장이 실적을 승인한다.
- ② 연구처장은 업적심사위원회 평가 및 평가단위원장이 승인한 결과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당해 연도 연구실적으로 확정한다.
- ③ 교무처장은 [별표 1] 연구실적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활용한다.
- ④ 과년도 평가에서 누락 및 수정이 필요한 연구실적은 업적심사위원회 평가, 평가단위원장의 승인 후 연구처장의 확인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교수업적평가 및 승진, 재임용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제7조(공동 연구실적의 평정)

- ① 공동연구실적은 연구논문, 연구저작물, 학술회의 발표 등 다수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말하며 [별표 2]의 공동연구실적 평정기준에 따른다.
- ② 외부 연구비를 공동으로 수탁한 경우의 연구비 수탁액은(본교에 등록된 과제에 한함) 연구비 전액(입금기준)을 총괄책임자의 수탁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약서상 세부 연구과제 및 수혜액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부 과제 책임자의 수탁액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총괄책임자의 수탁액에서 제외하며, 연구비 관리시스템 및 연구실적 평정에도 이를 반영한다.

제8조(임상진료실적 평정)

임상 진료실적의 평정은 임상 전임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별표 3]에 의거하여 주관하며, 연구처장은 임상 진료실적의 연구실적 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제5조 <별표 1> IV.연평균 외부 연구비(본교에 등록된 과제에 한함)의 기준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탁한 외부 연구비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3>에 의거한 임상 진료실적의 평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년 업적평가에 한하여 연구(산학)영역에 적용되는 평정기준은 본 규정 외에 종전 규정(2015.1.1.부 개정 규정)을 적용한 업적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5조 <별표 1> 중 IV.산학협연구실적 1. 외부 연구실적 다. 기타연구비 기준은 2019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I. 연구논문 중 1. 국제논문의 국제학술지 질적 요소 반영에서 EF(Eigenfactor)는 삭제한다. 단, 2022년까지 투고하여 2023년 이후 게재된 논문 실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2022년도 Eigenfactor 가중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실적 평정기준

I. 연구논문

1. 국제 1급(SCIE, SSCI, A&HCI) 학술지

구분	점수
SCIE	300
SSCI	600
A&HCI	600

※ 국제학술지의 질적 요소 반영(가중치)

- Subject Category 중복 시 상위 비율에 속한 Subject category로 인정

JCR list 기준	가중치
전체 저널 중 IF 기준 상위 30위 이내 저널	x 10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5% 저널	x 5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10% 저널	x 3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20% 저널	x 2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50% 저널	x 1.25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하위 50% 저널	x 1배

- Subject Category 내의 저널 수가 15개 미만일 경우

JCR list 기준	가중치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20% 저널	x2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상위 50% 저널	x125배
Subject category 내에서 IF 기준 하위 50% 저널	x1배

※ 2023년부터 연구논문 질적 가중치 중 EF(Eigenfactor) 기준은 삭제함.

단, 2022년까지 투고하여 2023년 이후 게재된 실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2022년도 Eigenfactor 가중치 기준 적용

2. 국제 2급(SCOPUS) 학술지 – 200점

3. 기타 국제학술지 – 150점

4. 국내 학술지

구분	점수
우수등재 학술지(한국연구재단 선정)	150
국내 1급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KCI 분야별 상위 40%]	130
국내 1급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KCI 분야별 상위 40% 이외]	100
기타 국내 학술지(교내 논문집 포함)	20

- ※ 대학(전공)별 연구업적 추가 인정은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의 내규를 따른다.
- ※ 국제학술지 연구논문에 대하여 Article, Review 외 문서유형은 학술지별 점수의 50% 인정 및 질적 요소 가중치 미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의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권, 호, 페이지(또는 아티클 번호) 등 출판 정보가 부여된 최종 출판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승진/재임용 심사 시에는 전임교원임용규정 제30조, 제44조에 의거하여 게재 확정된 연구실적도 인정될 수 있다.
- ※ 저널의 IF 및 JCR/KCI 상위 비율 적용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 동일 논문의 실적 중복 인정 불가
 - 동일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실적은 1건으로만 인정한다.
 - 원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받은 이후 Correction 논문 출판 시 추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II. 연구저작물

1. 전문 학술서적

출판사	전문/교양	점수		
		계	대학(원)[평가단위] 심사	저서평가위 심사
국제	외국 저명 출판사	600 ~1200점	600 ~1000점	0~200점
	기타 출판사	300 ~ 600점	300 ~ 500점	0~100점
국내	전문 저서(외국어)	300 ~ 600점	300 ~ 500점	0~100점
	전문 저서(한국어)	50 ~ 300점	50 ~ 200점	0~100점

	교양 저서(한국어)	50 ~ 100점	50 ~ 80점	0~ 20점
	번역서(국문/외국어 번역)	50 ~ 300점	50 ~ 200점	0~100점

- 전공과 관련되어 있으며, ISBN이 부여된 저서를 실적 평가대상으로 한다. 단, 시리즈 저서의 경우 아래와 같다.

권별로 ISBN이 부여된 경우 : 권별로 실적평가를 한다.

총괄 ISBN이 부여된 경우 : 실적 인정은 '저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 전문 학술서적의 개정·증보판은 개정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구분	적용
내용의 50% 이상	부여 점수의 80%
내용의 30~50% 미만	부여 점수의 50%
내용의 10~30% 미만	부여 점수의 30%
내용의 10% 미만	부여 점수의 10%

- 외국 저명출판사 목록

* 외국 저명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ornell University Press, Columbia University Press, Yal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T Press,
기타 동급의 세계적 유명 출판사

※. 대학(원) 업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어려울 시 '저서평가위원회'에 의뢰

2. 문예 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 등)

구분	점수
전국규모의 문예지 게재	50
기타문예지 게재	20
※ 문예 작품 Ceiling제 적용 : 연간 최대 300점	

III. 연구발표

1. 학술회의 발표

국제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 20점

국내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 10점

2. 예술·창작계열 연구발표

예술·창작계열의 연구발표실적은 유형과 등급으로 구분하며, 유형은 A, B, C, D형으로, 등급은 1, 2, 3급으로 연구발표실적 평정기준을 정한다. 각 분야별 유형과 등급은 [별표 4]를 따른다.

유형	등급		
	1급	2급	3급
A형	200	170	150
B형	150	130	100
C형	80	70	60
D형	30	30	30

3. 의상 부문 연구발표

국제 의상발표 – 150점

국내 의상발표 - 100점

IV. 산학협력 연구실적

1.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가. 국가연구비

- 인문·체육, 사회, 예술·창작계열 : 환산 수주액/1억 원×400점
- 공학, 자연A·B, 임상 계열 : 환산 수주액/1억 원×200점

나. 산업체 연구비

- 인문·체육, 사회, 예술·창작계열 : 환산 수주액/1억 원×800점
- 공학, 자연A·B, 임상 계열 : 환산 수주액/1억 원×400점

다. 기타연구비

- 환산 수주액/1억 원×100점 (※ Ceiling제: 최대 300점)

※ 기타연구비: 위탁 사업 중 해당 사업의 성격이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 및 실천 성격에 해당하는 사업비로서 해당 대학(원) 교수업적심사위원회의 동의를 통하여 기타연구비로 규정한 연구비

※ 계열 구분은 「전임교원 임용 규정」 [별표3]을 따른다.

※ 환산 수주액=(입금액/2)+(간접비-대응 자금)×2

- (간접비-대응 자금)<0일 경우 0으로 함
- 복수 연구자의 경우 합이 100%가 되도록 분배 가능

※ 본교 산하 의료기관 수주 실적은 해당 점수의 70%로 산정함(의료기관만이 계약 가능하다는 증빙 제출 필요)

2. 기술 이전료 수입

- 100점/연간수입액 1,000만 원

※ 100만 원당 10점으로 인정

3. 산업재산권(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 등록에 한함)

가. 특허

1) 국제특허 등록 - 400점

2) 국내 특허 등록 - 100점

나. 실용신안

1) 국제실용신안 등록 - 60점

2) 국내 실용신안 등록 - 30점

다. 디자인

1) 국제디자인 등록 - 200점

2) 국내 디자인 등록 - 100점

4.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 600점/1억 원

※ 연구비 실적과 중복인정 제외

5. 교원창업 - 300점

※ 연구 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활용한 창업실적에 한함

※ 본교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서류로 증빙

6. 기술 및 경영 자문 - 건당 10점

※ Ceiling제 : 최대 60점

※ 대상 기업의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필수

※ 회사방문 일자, 자문내용 등 확인서

7. 취업 연계 - 건당 20점

※ 학부 학생에게만 해당함

※ Ceiling제 : 최대 100점

※ 교수의 취업 지원 활동 내용 및 학생취업 확인서(재직증명서) 제출

※ 동일 학생에 대한 여러 교수의 실적 불인정

8. 계약학과·계약 트랙

- 협약자(학부 과정, 취업 연계형) : 건당 300점

- 협약자(비취업 연계형 또는 대학원 과정) : 건당 200점

- 운영자 : 50점/년

- 신규과목 개설 : 50점

※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 필수

※ 계약학과 /계약 트랙 교육과정 협약자와 운영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인정

※ 트랙에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3개 이상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함

※ 협약기여자가 복수인 경우 해당 점수/ n (n :총협약기여자 수)으로 산정함

9. 학생 창업지도 - 건당 100점

※ 학생들의 창업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점수 부여)

10.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 건당 10점

※ Ceiling제 : 최대 50점

※ 기업의 산학협력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11.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 건당 10점

※ Ceiling제 : 최대 50점

※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시 회당 점수 부여

※ 산학협력협약서 및 운영관리보고서

12. 국가기관 연구제안서 제출 : 건당 20점

※ 산학협력단장이 확인필한 증빙

[별표 2] 공동연구실적의 평정기준

1. 논문, 학술회의 발표

1)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 교내 학생이 주저자일 경우 주저자 인정 비율 계산에서 제외. 단, 외부기관 연구자 및 외부기관 학생은 계산에서 고려

- 단독 저자일 경우 : 인정 비율 = 100%

- 주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인정 비율 = $\frac{180\%}{(주저자수 - 교내학생주저자수)}$ (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저자는 출판된 논문에 제1저자, 교신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단, 교신저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주저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의 내규를 따른다.

2) 공동 저자 : 총 인정 비율 = 40%

- 공저자 개인별 인정 비율 = $\frac{40\%}{(총저자수 - 주저자수)}$

※ 공저자 개인별인정비율 < 8% 일 때, 8% 적용

※ 공동 저자 중에 교내 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고려

※ 공동 저자 중에 교내 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고려

※ 학생 저자란 논문에 기재된 Affiliation(소속)을 기준으로 교내외 학부생/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전공의를 말하며, 실적 인정은 해당 교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저서

- 저서평가 최종 점수 = 단독 chapter 저서평가 점수 + 공저 chapter 저서평가 점수

※ 단독 chapter 저서평가 점수 = (저서점수 / 전체 chapter 수) * 단독 chapter 수

※ 공저 chapter 저서평가 점수 = 공저 chapter 별 저서평가 점수[(저서점수 / 전체 chapter 수) * 1 / chapter 별 공저자수(본인 포함)]의 합

* 본인이 공저한 각 chapter 별로 해당 chapter 별 공저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함

- 국제저서 및 국내 저서 일괄 적용

- 단, 국제저서의 경우 최소 점수 100점, 국내 저서의 경우 최소 점수 10점

3. 특허

- 등록자 인정 비율 = 100%/총 발명자수

- 동일한 특허를 다수국가에 등록할 경우 1건만 인정

[별표 3] 임상진료실적 평정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의대, 치대, 한의대	실적지표	직접 수익	50점
		직접 수익 성장률	50점
	경영지표	경영자 평가	35점
	합계		135점
의대 지원계	실적지표	과시행 수익 성장률	50점
		개인 시행 수익 성장률	50점
	경영지표	경영자 평가	35점
	합계		135점

※ 치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실 임상 전임교원의 실적지표는 각 병원 일반계열의 평균 점수를 부여함

1. 용어의 정의

- 가. 의대 지원계의 범위는 각 병원 경영성과보상시스템 분류를 기준으로 함
- 나. 직접 수익은 개인 처방수익에서 처방성 재료비와 본인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으로 함

2. 평가지표 배점표

- 가. 직접 수익 등급 및 배점표(전체 임상전임교원(단, 지원계 제외)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로 함)

등급	구간(상위)	점수
1등급	상위 10%	50
2등급	상위 20%	40
3등급	상위 40%	30
4등급	상위 60%	20
5등급	상위 80%	10
6등급	상위 100%	0

- 나. 직접 수익 성장률 · 과시행(개인 시행) 수익 성장률 등급 및 배점표

등급	구간(상위)	점수
1등급	전년 대비 20% 이상	50
2등급	전년 대비 15% 이상	40
3등급	전년 대비 10% 이상	30
4등급	전년 대비 5% 이상	15

5등급	전년 대비 5% 미만	0
-----	-------------	---

다. 경영지표 배점표(최고 35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업무 수행 능력	전문지식 및 기술	업무(진료)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수준	5 ~ 0
	학생지도	학생 및 전공의 지도 등 교육자로서의 능력	5 ~ 0
	기여도	병원 홍보 및 수상 등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개인적 공헌도	5 ~ 0
업무 수행 태도	책임성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근면성	5 ~ 0
	협조성	상사나 동료 간의 원만한 협조 관계 유지	5 ~ 0
	적극성	부서 및 병원 업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욕	5 ~ 0
윤리성		임상 의사로서의 윤리의식 및 부정행위방지 노력	5 ~ 0

3. 평가 기간 및 주기

- 가. 평가 시기 : 매년 9월 말(연 1회)
- 나. 실적지표 평가 기간 : 전년 9월 ~ 8월(1년)
- 다. 승진예정자는 직전 평가까지 승진심사에 반영

4. 기타

- 가. 장기 연수자 등 1년 이상 장기 근무 공백자의 해당연도 임상진료실적은 0점 처리함
- 나. 연수 등으로 평가 기간(1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 월평균 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여 배점함

5. 임상 진료실적의 평정은 임상 전임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관하며, 2015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예술·창작계열 연구발표 분류 기준

1. 연구발표 분류 기준표

유형 \ 등급	1급	2급	3급
A형	200	170	150
B형	150	130	100
C형	80	70	60
D형	30	30	30

2. 단과대학별 연구발표 분류표

가. 음악대학

1)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독주회, 독창회, 오페라 주역, 창작(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합창), 오케스트라 지휘(시향 정기연주회 급), 오페라 지휘(대규모/전곡)
B형	3-5중주(전프로), 협연, 듀오 음악회, 창작(독주곡, 가곡, 전자음악), 기획연주 지휘, 오페라 지휘(소규모)
C형	실내악(전프로), 오페라 조연, 콘서트 협연, 독창 협연, 편곡(관현악, 실내악), 실내악단 지휘
D형	부분 참여, 가곡편곡, 독주곡 편곡

* 모든 실적은 인정된 전문 연주단체 또는 전문연주자들의 공연에 한하여 인정

* 재연주 - 첫 공연 후 1년 이내/1회에 한해 인정 (단, A형과 B형은 70% 인정)

* 1년 이내 동일 레퍼토리 50% 이상은 재연주로 간주

* 국내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1편은 실기 점수 200점에 해당

2) 연구업적 등급 분류

가) 작곡과

등급	내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한국작곡가협회, (사)아시아 작곡가연맹, 전자음악협회, 창악회, 미래악회, 통영국제 음악제, (사)한국여성작곡가협회, Pan Music Festival(범음악제), Project21AND, 대구현대음악제등의 현대음악단체, 또는 국립오페라단, 시립오페라단의 음악협회에 등록된 공식 오페라단,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각 시립 교향악단 등의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위의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고양아람누리, LG아트센터 등의 대관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는 정상급 홀에서 작품이 연주되는 경우 국외의 Festival, 연주단체, 음악회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1세기악회, 지음회, 운지회, 소리목, 향신회, 비전C, 베리타스뮤직케, 창연학회 등의 작곡동인들의 음악회 또는 신생 작곡가동인회에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음악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 오페라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작품이 발표되는 경우 2. 개인의 독주회나 민간 양상블단체의 위촉받아서 연주되는 경우 3.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의 연주홀에서 연주되는 경우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공공기관 등의 단체나 아마츄어 음악단체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2.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방의 홀이나 교내 음악회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3. 위에서 언급한 단체나 홀이더라도 연주회의 형태가 아니라 세미나에서 작품을 연주하는 경우

나) 성악과, 기악과

등급	내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한국오페라단, 대구오페라축제,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참가단체 등의 지명도 높은 오페라 프로덕션의 대극장 규모 작품출연 2.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각 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상급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및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및 각 지방 시립합창단의 협연 3. 위의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성남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영산아트홀, 금호아트홀, 롯데콘서트홀 등 대관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는 정상급홀에서의 연주 4. 국외의 오페라단, 음악 Festival, 연주단체, 오케스트라 협연, 음악회 등 초청 연주 5. 공식적인 Label이 있는 음반회사의 음반제작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인된 전문공연장 및 연주장 2.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초청단체가 아닌 민간 오페라단의 공연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 협연 3. 소극장 오페라 작품 출현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된 전문 공연장 및 대학부설공연장

나. 미술대학

1)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국내/국제 개인전
B형	국내/국제 2인이상 단체전
C형	국내/국제 전시회 기획

※ 국내등재(후보)학술지 논문 1편은 실기점수 200점에 해당

2)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p>1. 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Guggenheim Museum(New York & Bilbao),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New York), National Gallery of Art(Washington, D.C.), Tate Modern Museum(London), Centre Pompidou(Paris), Mori Museum(Tokyo), 등등의 미술관 - White Cube Gallery, Serpentine Gallery, Pace Gallery, Gagosian Gallery, Pearl Lam Gallery, Satchi Gallery 등등의 갤러리 - Venice Biennale, Kassel Documenta, Whitney Biennial, Manifesta, São Paulo Art Biennial, Berlin Biennale, Istanbul Biennale, Shanghai Biennale, Yokohama Triennale, Taiwan's international Art Biennial 등등의 비엔날레 <p>1) 국공립 및 사립미술관 등의 미술관급 전시와 지명도 있는 갤러리, 대안 공간 등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전시에 초대작가로 참여한 경우</p> <p>2)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원 및 대학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전시에 초대작가로 참여하는 경우</p> <p>2. 국내</p> <p>1) 국공립 및 사립미술관 등의 미술관급 전시와 지명도 있는 갤러리, 대안 공간 등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전시에 초대작가로 참여한 경우</p> <p>2) 국내 비엔날레 및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제 등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전시에 초대작가로 참여하는 경우</p>
2급	<p>1. 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1급 외 공인된 갤러리, 대안 공간, 지방자치 단체 및 협회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전시. <p>2.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급 외 공인된 갤러리, 대안 공간, 공인된 사단법인 및 협회,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전시.
3급	<p>1. 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1, 2급 외 기타 전시 <p>2.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 2급 외 기타 전시

* 국제 1급은 국공립 미술관, 사립미술관, 공인된 갤러리, 대안 공간, 대학 미술관, 해외 공공기관(대사관, 문화관 등) 등의 공신력 있는 전시공간의 기획전, 초대전, 특별전 등등의 전시를 의미함.

* 국내 1급의 미술관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준하는 미술관), 시립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에 준하는 미술관), 도립미술관(경기도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등에 준하는 미술관), 사립미술

관(삼성미술관 리움, 일민미술관, 사비나 미술관, 토탈 미술관, 김종영 미술관, 한벽원 미술관, 코리아나 미술관, OCI 미술관 등에 준하는 미술관)등,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을 의미하며, 이에 준하는 미술관에 대해서도 업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국내 1급 갤러리는 국내 정상급 갤러리(국제 갤러리, 학고재 갤러리, PKM, 갤러리 현대 등에 준하는 갤러리)등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준하는 갤러리에 대해서도 업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국내 1급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 등 국내 비엔날레이며, 이에 준하는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업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대안 공간이라 함은 전통적인 전시공간(미술관, 갤러리)의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공간(ex. Site-Specific Art)등을 의미함. 국내 1급 대안 공간은 대안공간 무프, 대안공간 풀, 사루비아 다방, 인사미술공간 등이며, 이에 준하는 대안 공간에 대해서도 업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공간이라 함은 국립 미술관 및 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서 주로 장소 특정적 미술이나 실험적 미술을 선보이는 한시적 공간을 의미함.
- *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미술제라 함은 비엔날레 이외의 미술축제행사 및 다원예술 행사(페스티벌 봄 등등)로서 주로 총감독의 큐레이팅에 의해 작가로 초대되어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국제 및 국내 1급 전시회는 전시를 기획한 주관/주체 기관 또는 단체/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초대전시회를 뜻하는 것임. 예시를 든 미술관 및 갤러리 이외에도 참여작가 인지도 및 미술계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초대 기획전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급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국제 및 국내 2급은 국내 1급 외 공인된 갤러리에서 이루어지는 대관전, 신생 대안 공간, 공인된 사단법인 및 협회,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일반적인 전시를 의미함.
- * 국제 및 국내 3급은 국내외 1, 2급 외 기타 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인된 미술관 및 갤러리, 대안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한시적인 전시회나 매년 이루어지는 동문회전 등을 의미함.
- * 국내, 국제 전시회 기획은 국내외 저명 전시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획을 활성화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창작활동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 * 위의 모든 연구업적에 대한 내용은 미술대학 교수업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시임.

다. 예술·디자인대학

1)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가)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공연 및 연주	창작 및 제작
A형	80분이상 혹은 9곡이상의 연주	60분이상 혹은 6곡 이상의 음반(음원) 및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의 작곡/편곡/제작
B형	60분이상~80분미만 혹은 6곡~8곡이상의 연주	40분이상~60분미만 혹은 3~5곡의 음반(음원) 및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의 작곡/편곡/제작
C형	40분이상~60분미만 혹은 3~5곡의 연주	40분미만 혹은 1~2곡 이하의 음반(음원) 및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의 작곡/편곡/제작
D형	40분미만 혹은 1~2곡 이하의 연주	

나)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 또는 지명도 높은 공연 프로덕션의 대극장 규모 작품에서 작품 및 단체 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고양아람누리, LG아트센터 등의 대관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인된 전문 공연장과 같은 정상급 홀에서의 작품 발표 또는 연주 2. 해외의 음악 Festival, 연주단체, 음악회에서의 작품 발표 또는 연주 3. 멜론·케이티뮤직·엠넷·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벅스뮤직·소리바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 Label이 있는 국내·외주요 음반 및 온라인 유통(디지털 음반 유통)사를 통해 발표된 온·오프라인 음원 및 음반과 개봉관 상영작인 영화의 음악, 지상파 방송·케이블티비 방송·아이피티비 방송 등의 채널을 통해 발표된 방송·드라마·광고의 음악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협회 미 가입 민간 기획사 공연·협연 2. 개인적인 독주회 및 민간 앙상블 단체 위촉 공연의 연주 3. 1급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울·수도권 소재 연주홀에서의 연주 4. 1급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통사·방송사를 통해 발표된 음원 및 영상음악과 개봉관 외 상영관에서 발표된 영화의 음악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공공기관 등의 단체나 아마추어 음악단체에서의 작품 발표나 공연 2.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연주홀이나 교내 음악회에서의 작품 발표나 공연 3. 장소를 불문하고 일반적 연주회의 형태가 아닌 세미나에서 작품을 연주하는 경우. 그 외 1급·2급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된 전문 공연장 및 대학부설 공연장

* 공연은 정식의 공연 형식을 띤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오페라, 콘서트, 무용극, 교육연극 등을 지칭한다. 모든 연구실적은 인정된 전문 연주단체 또는 전문연주자들의 공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영상물은 정식으로 상영되거나 상용화된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멀티미디어 콘텐츠, 컴필레이션음반, 게임을 지칭한다.

- * 모든 역할은 실질적인 참여가 인정될 경우에만 점수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향 조정 혹은 불인정 할 수 있다
- * 동일한 공연을 같은 시즌에 반복 혹은 순회공연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한다. 단, 시리즈물일 경우 장기 공연으로 인정한다. 재연주-첫 공연 후 1년 이내/1회에 한해 인정(단, A형·B형은 70%인정)한다. 1년 이내 동일레퍼토리 50%이상은 재연주로 간주한다
- * 한 공연을 여러명이 나누어 하더라도 이중주이상 6중주 이하 연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인정한다.
- * 한 연주회에서 연주되는 전체 곡 중 부분을 연주할 때에는 연주곡의 숫자에 따라 1/N을 한다.
- * 모든 실적은 팜플렛과 영상(음반)을 모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음반)이 없을 경우시간과 분량을 알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국외에서 초대된 작품 활동에는 국외 영화제/연극제/음악제에 출품되어 상영 혹은 공연된 작품도 포함된다.

2) 연극영화학과

가)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국제/국내 저명 작품
B형	국제/국내 일반 작품
C형	기타 작품

- * 연극분야의 창작물은 국내·외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전문공연장에서 공연한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인형극을 포함한 공연예술장르의 창작물에 한하여 인정하며, 등급별 요건 및 역할별 인정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국제저명 : 선진 국가의 전문 극단이 제작한 작품 또는 저명한 국제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서, 선진 국가의 전문공연장(300석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이상)에서 공연한 50분이상의 작품
 - 국내저명 :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이상)에서 공연한 50분이상의 작품
 - 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공연장(300석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이상)에서 공연한 50분이상의 작품
 - 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100석이상)에서 공연한 50분이상의 작품
 - C급 기타 : 국외일반,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50분 미만의 공연작품을 말한다.
 - 동일 작품에서 연출과 제작참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 1가지만 인정하며, 순회공연(재공연)은 1회에 한하여 50%로 인정
- * 영화영상분야 창작물은 국내·외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하고, 전문상영관 또는 공중파, 케이블TV에서 상영한 작품에 한하여 인정하며, 등급별 요건 및 역할별 인정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작한 작품의 상영시간이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50%만 인정하며, 연작의 경우 총 상영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 국제저명 : 국외의 단체가 주관하는 저명한 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이나, 선진 국가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선진 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 또는 공중파, 케이블TV,IPTV,VOD에서 상영한 50분 이상의 작품

2. 국내저명

- 가. 국내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 전문상영관(150석 이상) 또는 공중파, 케이블TV,IPTV, VOD에서 상영한 50분 이상의 작품
- 나.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발표에 초청 상영된 15분 이상의 작품
- 3. 국외일반 : 국제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의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 또는 외국의 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작품으로서 국외의 전문상영관 또는 공중파, 케이블TV,IPTV,VOD에서 상영한 15분 이상의 작품
- 4. 국내일반 : 국내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의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 전문상영관(50석) 또는 공중파, 케이블TV,IPTV, VOD에서 상영한 15분 이상의 작품
- 5. 기타 : 국외일반,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
- 6. 동일 작품에서 제작과 제작참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가장 높은 평점 1가지만 인정하며, 순회상영(재상영)은 1회에 한하여 50%로 인정한다.

* 국내등재(후보)학술지 논문 1편은 실기 점수 200점에 해당

나)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1. 연극 및 뮤지컬 : 연출, 창작희곡 및 대본, 주연배우 2. 영화영상 : 감독, 제작, 기획, 시나리오, 촬영, 주연배우
2급	1. 연극 및 뮤지컬 : 제작, 기획, 예술감독,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연기감독, 음악감독, 의상디자인, 기술감독, 무대감독 2. 영화영상 : 편집, 시각특수효과,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디자인
3급	1. 연극 및 뮤지컬 : 드라마투르기, 공연번역, 조연 2. 영화영상 : 각색, 번안, 조연출, 조감독, 조연, 기술감독, 조명감독

3) 디자인 계열학과·도예학과

가)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국외 개인전
B형	국내 개인전
C형	국외 단체전
D형	국내 단체전

나)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 개인전 : 국내·외 저명한 국공립, 사립,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 단체전 : 국내·외 저명한 국공립, 사립,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기관의 지명 초대작가임

	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전 : 국내·외 지역의 국공립, 사립,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 단체전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로서 5개국 이상이 참가한 경우에 한함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전 : 1급 및 2급 외 기타 국내·외 개인 전시 - 단체전 : 1급 및 2급 외 기타 국내·외 단체 전시

* 국내·외 1급

1. 국내 1급 : 국내 대표적인 국공립, 사립 미술관, 갤러리, 대안 공간,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디자인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선재센타,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가나아트센타, 학고재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2. 국외 1급 : 국외 대표적인 국공립, 사립 미술관, 갤러리, 대안 공간,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Guggenheim Museum(New York & Bilbao),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New York), National Gallery of Art(Washington, D.C.), Tate Modern Museum(London), Centre Pompidou(Paris), Mori Museum(Tokyo), 전시 및 이에 준하는 미술관
 - White Cube Gallery, Serpentine Gallery, Pace Gallery, Gagosian Gallery, Pearl Lam Gallery, Satchi Gallery 및 이에 준하는 갤러리
 - Venice Biennale, Kassel Documenta, Whitney Biennial, Manifesta, São Paulo Art Biennial, Berlin Biennale, Istanbul Biennale, Shanghai Biennale, Yokohama Triennale, Taiwan's international Art Biennial 및 이에 준하는 비엔날레

* 국내·외 2급

1. 국내 2급 : 국내 A급 외 지역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공인된 갤러리, 대안 공간, 공인된 사단법인, 대학,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전시
대안공간은 기존의 전시관(미술관, 갤러리) 외의 대안적인 공간을 의미함
2. 국외 2급 : 국제 A급 외 지역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공인된 갤러리, 대안 공간, 해외 공공기관, 대학 등등의 전시
대안공간은 기존의 전시관(미술관, 갤러리) 외의 대안적인 공간을 의미함

* 국내·외 3급 : 국내·외 1급 및 2급 외 기타 전시

라. 무용학부

1)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국내 및 국제 개인공연 40분 이상 공연된 경우 → 신작 및 레퍼토리공연 (안무, 예술감독, 연출)
B형	국내 및 국제 개인공연 20분 이상 40분 이내 공연된 경우 → 신작 및 레퍼토리공연(안무, 예술감독, 연출)

C형	국내 및 국제 개인공연 15분 이내 공연된 경우 → 신작 및 레퍼토리공연 (안무, 예술감독, 연출)
D형	국내 및 국제 공연 중 부분 참여, 공동안무, 조연출, 조안무, 출연한 경우
※ 개인공연은 초청공연을 포함하며 단 40분 이상의 작품을 공연한 경우에 한함	
※ 출연은 년 3회로 제한한다.	
※ 동일한 Contents의 공연을 1년 이내에 재공연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0% 인정함	

2) 2인 이상 안무 연구업적 점수표

구분	2인 0.7	3인 0.6	4인 0.4	5인 0.3	6인 0.2	7인 0.1
200	140	120	80	60	40	20
170	119	102	68	51	34	17
150	105	90	60	45	30	15
130	91	78	52	39	26	13
100	70	60	40	30	20	10
80	56	48	32	24	16	8
60	42	36	24	18	12	6
30	21	18	12	9	6	3

3)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한국무용협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사)한국발레협회, (사)한국춤협회, (사)한국전통춤협회, 한국현대춤협회,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국·시립 단체 등의 국내 정상급 기관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② 위의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토월극장, 총무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전국문화예술회관 등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회원기관으로서 6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경우 ③ 국내 외 Festival 또는 공공기관 및 재단의 초청공연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급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우 ②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소속된 회원기관으로서 6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경우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및 민간 아마추어 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우 ② 교내 무용공연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③ 1,2급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공연장에서 발표하는 경우 ④ 위에서 언급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 야외공연장의 경우 주최기관 및 규모를 바탕으로 무용학부 교수업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마. 공과대학

1) 건축학과

가) 연구업적 유형 분류

유형	내용	
A형	건축준공작품 국내·외 전문지 게재	건축준공작품 국내·외 전시
B형	건축계획작품 국내·외 전문지 게재	건축계획작품 국내·외 전시
C형	국제 전시회 기획총괄	
D형	국내 전시회 기획총괄	

나) 연구업적 등급 분류

등급	내용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국제 전문지로 발행국가 언어 (국내일 경우 한국어 포함) 최소 2개 국어로 게재되는 경우 2. 국외 대표적인 국공립, 사립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및 국제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시 (단체전일 경우 주최기관의 지명 초대작가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 전문지이며 발행국가 언어로만 게재되는 전문지 2. 1급 외 국외 지역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공인된 갤러리, 해외 공공기관 등등의 전시 3. 국내 대표적인 국공립, 사립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등에 준하는 전시 및 국내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시(단체전일 경우 주최기관의 저명 초대작가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전문지이며 한국어로만 게재되는 전문지 2. 국내 2급 외 지역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공인된 갤러리, 해외 공공기관, 공인된 사단법인, 대학, 지방자치 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전시 (단체전일 경우 5개국 이상이 참가한 경우에 한함)

*자료제출 (출판년월, 전문지 제목, 목차, 범위, 저자명,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PDF 파일 업로드)

*동일 작품으로 2개 이상의 실적입력이 발생할 경우, 높은 점수의 연구실적만 인정

*A형 연구업적에서 해당 전문지가 작품집일 경우 작품별로 연구업적 인정

*A형 연구업적에서 영문전문지일 경우 "international magazine"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A형으로 인정

*A형 및 B형 연구업적 내용에서 대안공간은 기존의 전시관(미술관, 갤러리) 외의 대안적인 공간을 의미함

*A형 및 B형 1급에 제시한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등의 예시는 국내외 가장 영향력 있는 전시공간으로 시기와 관점에 따라 그 위상은 유동성이 다분하므로 이에 준하는 전시공간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음

*국내, 국제 전시회 기획은 국내외 저명 전시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획을 활성화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창작활동을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음. 총괄 큐레이터로서의 참여만 인정